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75

발의연월일: 2021. 1. 14.

발 의 자:진선미·문진석·박영순

소병훈・윤준병・조오섭

김윤덕 • 진성준 • 천준호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이므로, 공원과 관련된 인문·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 작성·유지·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여 위탁 업무 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0조, 제31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에"를 "제57조의3제2항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 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리센터가 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생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u><삭 제></u>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	
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u><삭 제></u>
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	
<u>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u><삭 제></u>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	
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	
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	
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저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한다)를 설립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삭	ㆍ 저	>
\ \	<u>^1</u>	/

네31조(설립)	1	제57조	:의3제	<u>2항</u>
<u>에</u>				
	_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화) 국토 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 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리센터가 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에 용산공원의관리청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화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